부가세 신고할 때 자주 묻는 질문들

2023.01.11 · by 토스페이먼츠

출처: https://www.tosspayments.com/blog/articles/semo-82

Q. 6 월 결제인데 7 월 취소한 건처럼 분기가 바뀔 때의 금액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A. '결제취소'의 경우, 실제 취소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해 신고합니다.

보통 1~6 월(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7 월에 하기 때문에, 6 월에 결제가 발생하고 7 월 부가가치세 신고일 전에 결제취소가 되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결제취소건은 취소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차감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1~6 월(상반기)에 신고한 결제금액을 7~12 월(하반기)에 결제취소 건으로 환급 및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사장님이 납부할 금액은 동일합니다.

Q. 신고 금액과 실제가 달라 가산세를 내거나, 과다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아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가산세 납부와 과다신고 환급, 두 가지 경우를 확인해 볼게요.

- (1) 신고 금액과 실제가 달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에 적힌 누락 신고금액(결정과세표준)과 예상 고지액을 확인해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 수령 30 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2) 과다신고를 해서 환급이 필요한 경우 과다신고를 했다고, 세무서가 별도로 안내를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과다신고가 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과다신고가 됐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국세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 년이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현금성 결제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필수로 발행해야 할까요?

A. 사장님의 질문으로 볼 때 여기서 '현금성 결제'는 자사몰 판매, 직접 판매를 할 때 발생하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형태의 매출로 보이는데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건별 10 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발행하지 않을 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0 만원 미만의 거래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매출이 누락된다면 추후 가산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줄뿐 아니라,신용카드발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매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가 없을 땐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코드(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 정보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두길 추천드립니다.

Q. 현금영수증 발급일이 실제 결제일과 달라요. 어떤 일자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A. 단순히 발급일과 결제일만 다르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Q. 스마트스토어 정산내역에서 '과세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공급가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정산 내역에 표기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금액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은 표기된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Q.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 제품을 판매하는데, 매출에 택배비를 포함해 매출신고를 하면 택배비만 부가세 과세를 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매입처는 면세사업장입니다.

A. 과일을 판매하면서 배송비(택배비)를 함께 수취할 땐, 배송비가 재화 공급에 필수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처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매입금액과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서 등의 증빙을 받으시면 됩니다.

Q. 홈택스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매출자료가 누락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홈택스에서 모든 매출자료를 제공하진 않아요. **오픈마켓과 자사몰을 모두** 이용하신다면 오픈마켓과 PG 사에서 각각 그 내역을 받아 입력해야 합니다. 사장님 계좌로 바로 입금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매출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제공 자료 그대로 신고를 했다가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홈택스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매출내역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혼자 부가세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사업용카드 매입공제 적용할 때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공제/불공제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승인일자	가맹점 사업자번호	가맹점명	공급가액	세일
	2022-09-26	116-81-19477	(주) 엘지씨엔에스	637	
ο	2022-09-26	411-86-01799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43,546	
ο	2022-09-26	411-86-01799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215, 380	2
	2022-09-26		우정사업본부	6, 437	
Ο¨	2022-09-26		법원행정처	910	
Ü.,	2022-09-26		법원행정처	910	
	2022-09-25		씨제이올리브네트윅…	13,637	

1 2 3 4

온라인 결제의 경우, 국세청 자동분류 시스템이 '불공제'로 분류해둔 것이 실상 '공제'로 분류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OO 페이먼츠로 가맹점명이 잡히는 경우, 공제가 불공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실질 내역과 비교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